

건양대학교 수탁어린이집 운영 규정(3-1-19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및 건양대학교에서 수탁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건양대학교 수탁어린이집 운영 규정(이하 “운영 규정”이라 한다.)은 건양학원 및 건양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적용한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3조(기능) ① 수탁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수탁어린이집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
2.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어린이집 원장 추천
6.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아동보육학과장이 겸임하고, 기획조정실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정족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 3 장 임용

제9조(원장 임면)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되, 원장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

② 원장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총장은 원장을 임기 내 면직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.

제10조(수탁 책임교수) ① 수탁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수탁 책임교수를 두며, 책임교수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어린이집별 수탁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
2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
3. 기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 4 장 보고 및 평가

제11조(보고) 원장은 수탁어린이집의 운영실적과 계획을 매년 8월과 차기년도 2월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)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.

1. 어린이집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
2. 안전, 영양, 건강, 교육 규칙 실시 여부
3. 제11조에 의해 보고된 사항
4.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 5 장 기타

제13조(운영세칙) 수탁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